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SILVER SMILE

노인을 보호하는 힘

★★★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

www.noinboho.or.kr

인권의 핵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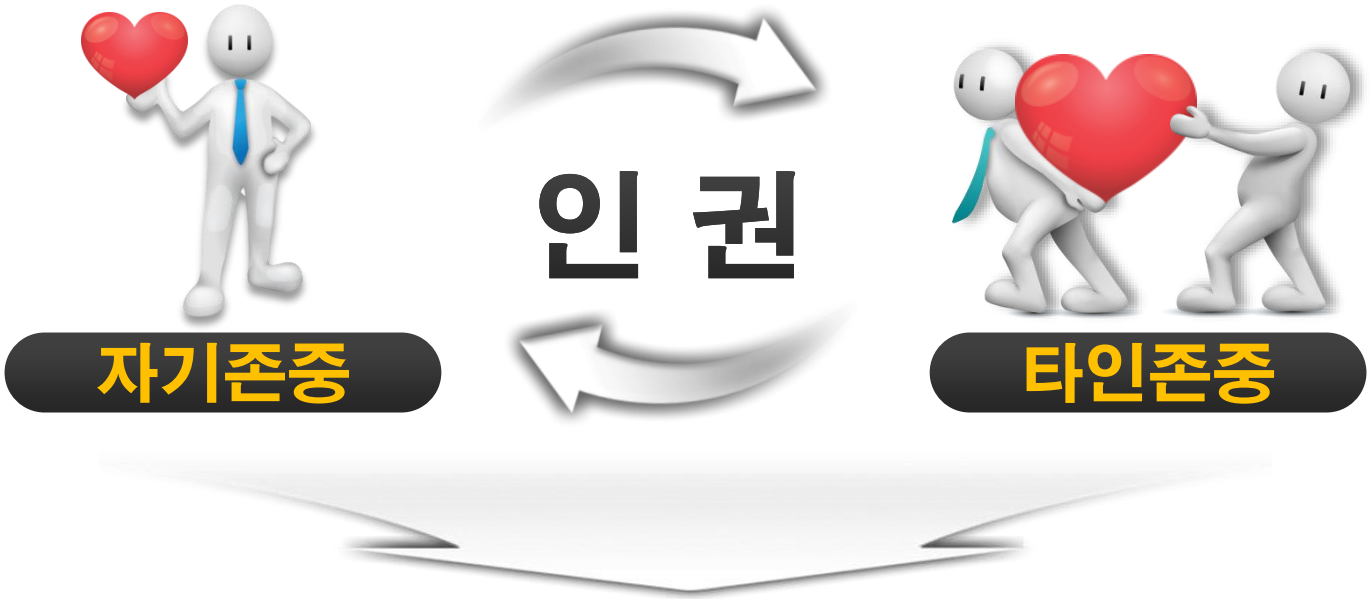

{ 서로의 행복을 소중히 함 }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항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신체적
- 정서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 가혹 행위
- 유기 및 방임
-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신체적 학대 대표적행위

1.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2. 감금, 거주지출입 통제
3. 신체 구속
4.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
5.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 단절시킴
6.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임
7. 원치 않는 일(노동)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대표적행위

1. 쳐다보지 않고 무시함
2. 말을 걸지 않고 대화 하지 않음
3.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함
4. 지인 및 가족과의 사회활동, 연락 등 방해
5.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
6. 고함, 욕설, 모욕
7.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창피수치심을 느끼게 함
8.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킴

성적 학대 대표적행위

1. 강제적인 성관계나 강요, 시도
2.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짐**
3.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4.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성적부위를 노출하여 옷·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시킴
5.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6. 학대행위자의 성적행위나 음란물을 보게 함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성적 학대 대표적행위

1. 강제적인 성관계나 강요, 시도
2.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짐**
3.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4.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성적부위를 노출하여 옷·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시킴
5.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6. 학대행위자의 성적행위나 음란물을 보게 함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대표적행위

1.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공적 부조 급여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2. 빌린 돈 및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3. **노동에 대한 대가 미지급**
4. 허락 없이 신용·명의 도용하여 이익을 취함
5.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 날조
6. **부양 전제의 재산상속 약속 및 증여 후 부양의무 미이행**
7.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방임 학대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학대 대표적행위

1.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 방치
2.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함
3.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하지 않음
4.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지원 하지 않음
5.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 혹은 소홀히 함
6.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ex.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음

자기방임 학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유기 학대 대표적행위

1. 노인과 연락, 왕래 두절
2. 노인을 시설·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왕래 두절
3.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4.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 거부

노인학대의 유형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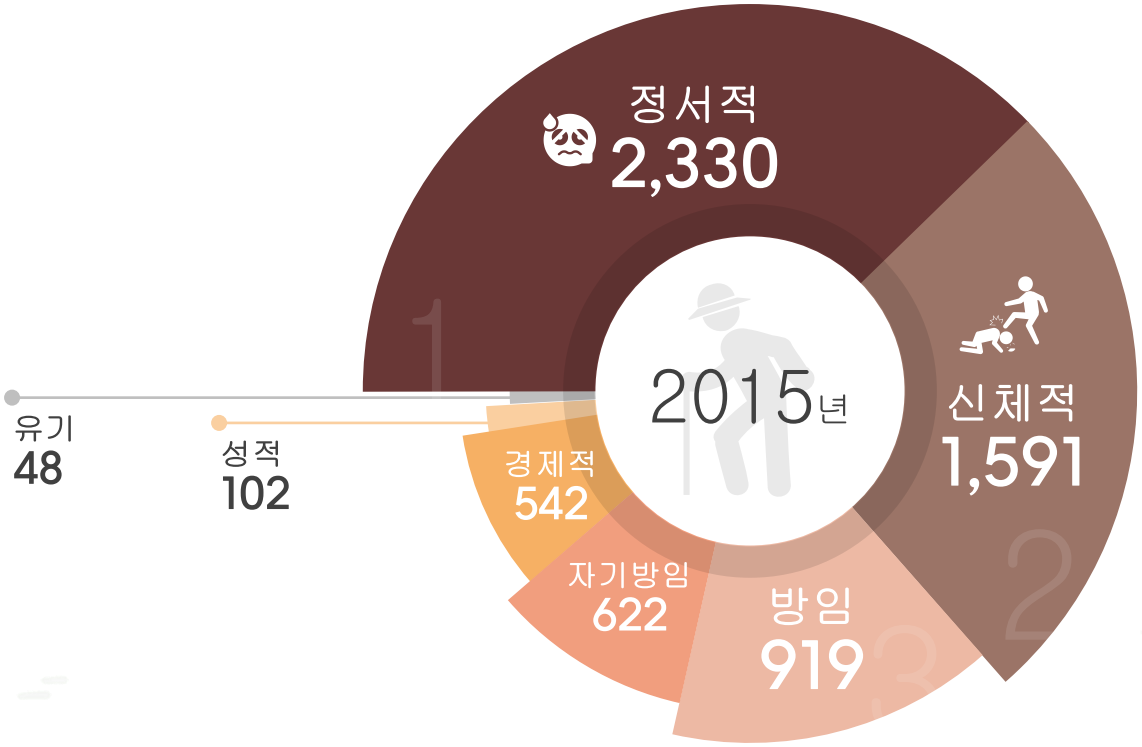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노인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대상인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형태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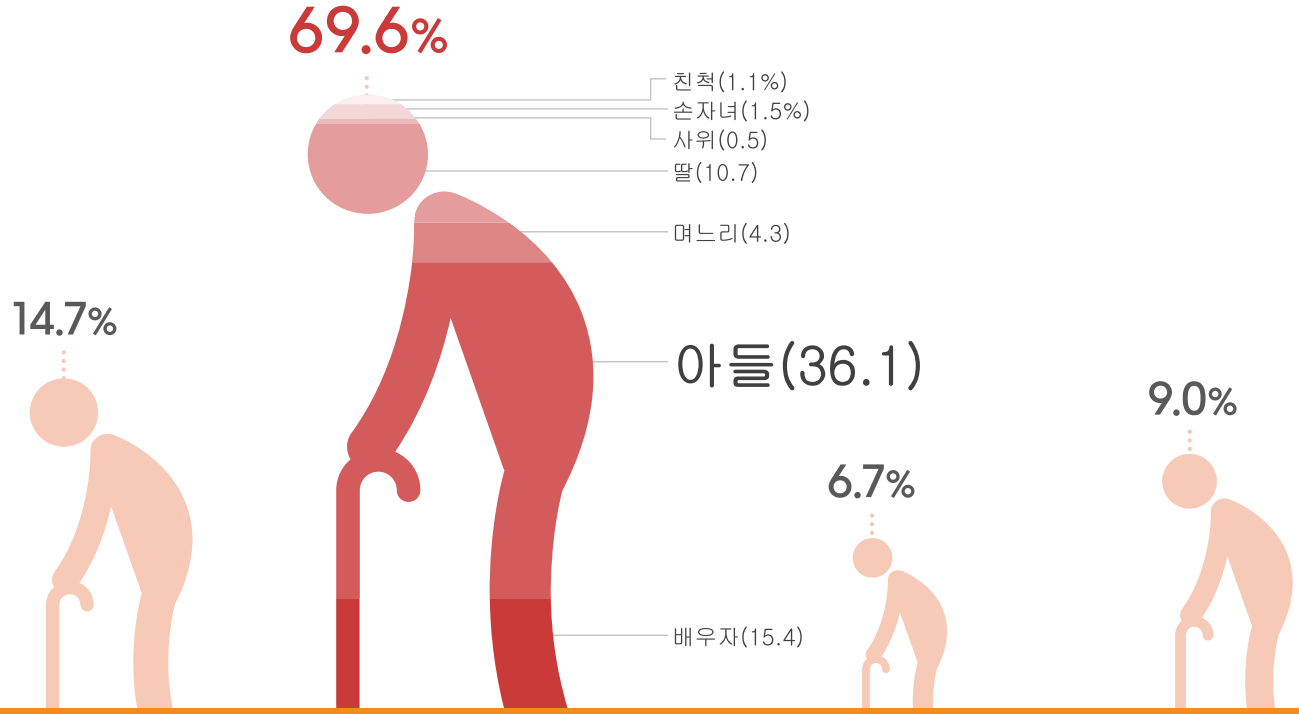

단위: (명,%)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622명	2,940명	283명	379명	총 4,224명

노인학대를 알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노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 입 과 정

- 노인학대 상황을 조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결 후에도 사후관리 실시
-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협력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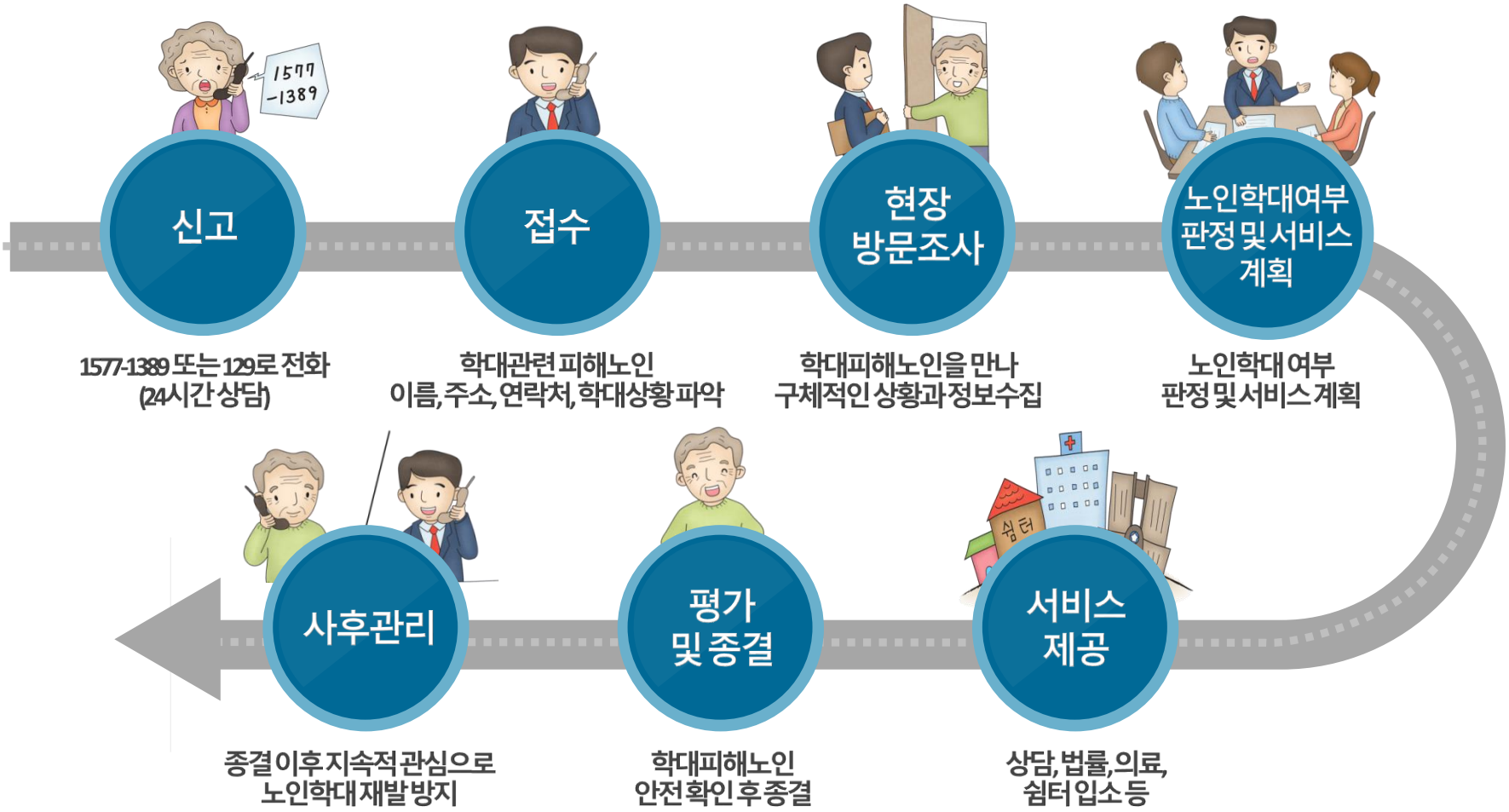

인권교육의 의무화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2017.10. 24. 시행 2018.4.25)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제6조의3)조항이 신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있어 인권교육 지표가
포함됨으로써
노인복지실천에 있어서 노인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견됨

인권교육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의 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14조의 2

(장기요양 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기관)

- 제10조제1호 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2(인권교육)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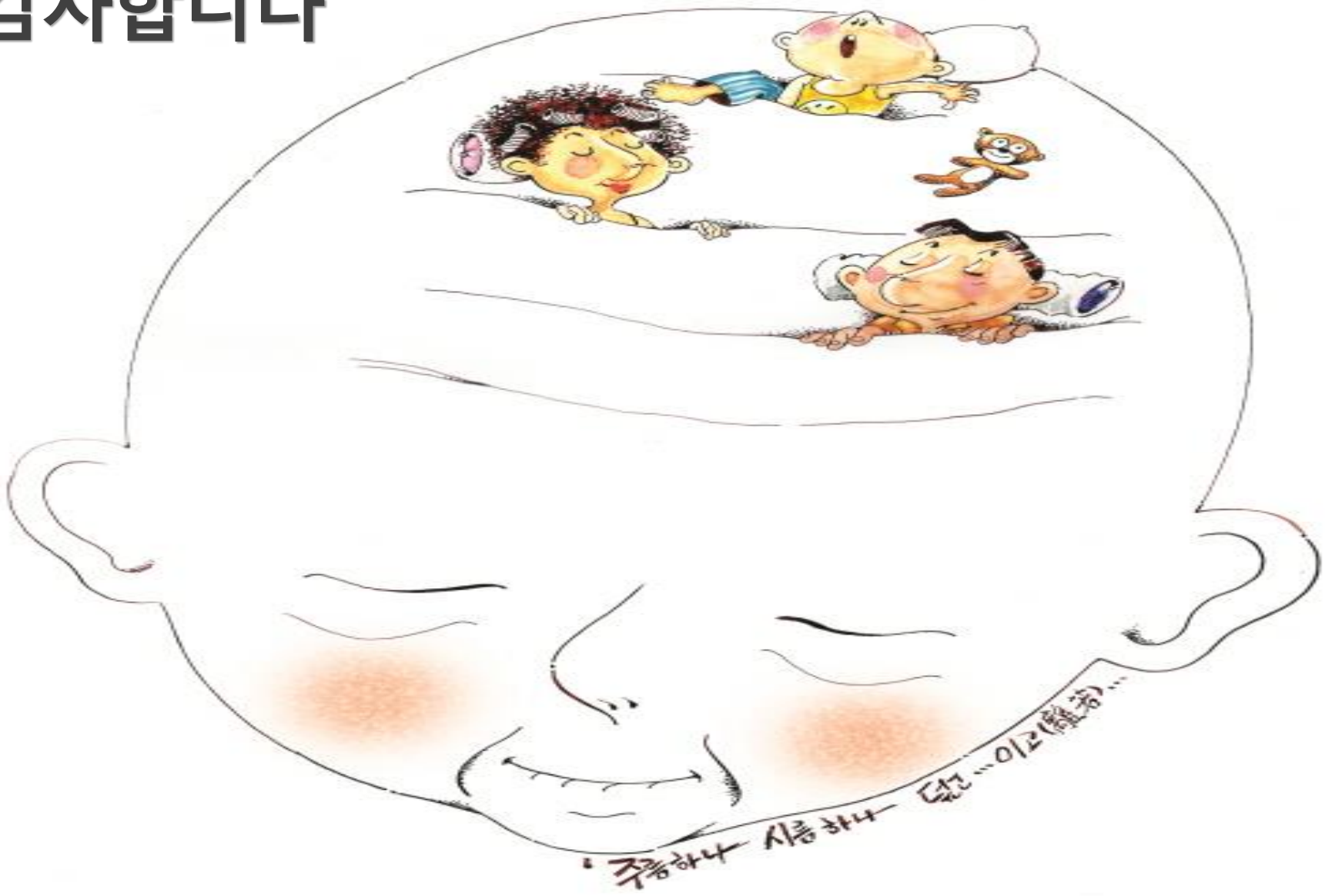
감사합니다